

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
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

의안 번호	15007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12. 8.
제출자 : 정부

제안이유

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,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경제협력 촉진기반을 마련하여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한층 확대·강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양 당사국은 「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」 제24조 및 「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」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(안 제1.2조).
- 나. 각 당사국은 부속서 2-가에 규정된 자국 양허표에 따라 상대 당사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함(안 제2.4조 및 부속서 2-가).
- 다.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상대 당사국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

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(안 제7.7조).

라. 양 당사국은 교역을 활성화하고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 특혜 원산지 규정을 마련함(안 제3.2조 및 부속서 3-가).

마. 양 당사국은 관세법 및 규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, 일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고, 통관절차의 효율적 운영 및 간소화, 관세 당국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통관 절차를 마련함(제4.2조, 제4.3조).

바. 양 당사국은 에너지·자원, 선진산업, 순환경제, 시청각서비스, 스마트 농업, 보건의료산업, 관광, 운송, 디지털 경제·무역, 공급망, 경쟁, 바이오경제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,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여 협력활동을 운영 및 이행함(제13.1조, 제13.2조, 제13.8조).

사. 양 당사국은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당사국의 법규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하도록 보장하고, 재심사 및 불복청구를 보장하며,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,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무역·투자 증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통상산업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함(제1.7조, 제15조 및 제17조).

참고사항

가. 영향평가결과 : 별첨 영향평가결과 참고

나. 예산조치 : 별첨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참고

다. 국내산업 보완대책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※ 별첨 국내보완대책 미수립 결과 보고 참고

라. 입법조치 : 별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참고

마. 추진경위

- 2021. 10. 14 협상 개시
- 2023. 10. 14. 협상 타결
- 2024. 5. 21. 제22회 국무회의 심의(협정문)
- 2024. 5. 29. 협정문 서명(서울)
- 2025. 3. 4. 제9회 국무회의 심의(부속서한)
- 2025. 4. 22. 부속서한 서명

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
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

“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”을 정부가 비준하도록 「대한민국헌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라 동의한다.

붙임 :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

대한민국과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
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

**اتفاقية الشراكة الاقتصادية الشاملة بين حكومة جمهورية كوريا
وحكومة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**

**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
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
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**